보도자료

2025년 6월 26일 공보 2025-06-27호

이 자료는 6월 27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 단, 통신/방송/인터넷 매체는 6월 26일 12:00 이후부터 취급 가능

제 목 : 한국은행, 보다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해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

▣ **한국은행**은 단기자금시장에서의 **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**가 **추세적으로 축소**되는 등 최근의 공개시장운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**환매조건부증권**(이하 'RP') **매매**를 **유동성**의 **흡수**와 **공급**을 **병행**하는 **체계**로 전환하는 등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하였음*
[25.6.25. 금통위 의결]

* 25.4.30일 한국금융학회와의 공동 정책 심포지엄 등을 통해 이러한 개편 방향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음

o **(양방향 RP매매 시행)** 현행 **정례 RP매각**(매주 목요일, 7일 만기)과 별도로 **매주 화요일**에 **정례 RP매입**을 **14일 만기**로 실시

o **(RP매매 대상증권 확대)** 안정적인 RP매입 기반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 RP매매 대상증권*에 **3개 특수은행채**(산업금융채권·중소기업금융채권·수출입금융채권)를 **추가**

* (현행) 국채, 정부보증채, 통화안정증권,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

o **(RP매매 참여유인 제고) RP매매 대상기관** 및 **우수·부진 기관 선정 기준**을 **정비**하고, **우수기관**에 대한 **혜택**을 **강화**

o **(시행일)** 2025년 7월 10일(단, RP매매 대상기관 선정 기준 변경은 25.8.1일부터 시행)

▣ 금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은 시장 상황에 맞추어 **유동성을 보다 탄력적**으로 **조절**할 수 있는 **기반**을 **확충**함으로써 **원활한 자금순환 유도** 및 **단기금리 변동성 완화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o 아울러 RP매입을 정례화함으로써 한국은행 **유동성 공급제도 활용**에 대한 **낙인 효과**를 **완화**하고 **관련 프로세스**에 대한 **경험**을 **축적**시켜 비상시 **시장안정 조치**가 **즉각 작동할** 수 있는 **토대 조성**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
※ 자세한 내용은 <붙임> 「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」 참조

문의처 :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팀장 이종성, 차장 최지언(Tel (02) 759-4453, 4476)
공보관 : Tel 02-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http://www.bok.or.kr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한국은행
BANK OF KOREA

<붙임>

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위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

Ⅰ. 기본 방향

□ 최근 단기자금시장에서 **유동성 흡수 필요 규모**가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**추세적**으로 **축소**되는 등 공개시장운영 여건이 달라지고 있는 데 대응하여

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(이하 'RP') **매매 제도**를 **유동성의 흡수와 공급을 병행**하는 **체계**로 전환·개편*

*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등 시장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간담회(2차례) 및 서면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

□ 이와 함께 **안정적인 RP매입 기반 확보**를 위해 **RP매매 대상증권**에 **3개 특수은행채**를 **추가**하고

대상기관 및 우수·부진 기관 선정 기준을 RP매매 참여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**정비**

Ⅱ. 주요 내용

1 양방향 RP매매 시행

□ **정례 RP매각**은 현재와 같이 원칙적으로 **매주 목요일**에 **7일 만기**로 실시하면서 **정례 RP매입**을 기본적으로 **매주 화요일**에 **14일 만기**로 실시* [25.7.10일 시행]

* 단 지준적립 마감일이 속한 주간에는 RP매입을 실시하지 않음

o 다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(이하 '통방') 포함 주간과 그 직전 주간의 RP매입은 현재 RP매각과 같이 **통방일자에 맞추어 입찰일자 및 만기**를 **조정***

* 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기대 정도가 입찰참여자들의 응찰 여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. 현재 정례 RP매각도 통방일자에 맞춰 조정하고 있음

— 통방 직전 주간의 정례 RP매입은 만기를 그 다음 주 통방 회의일로 맞추어 조정하여 실시하고,

통방 개최 주간에는 정례 RP매입을 통방 당일에 만기를 다다음 주 정례 입찰일로 조정하여 실시

o **입찰방식**은 **정례 RP매각**의 경우 현재대로 기준금리를 **고정입찰금리**로 하는 **모집방식**을 유지하되, **정례 RP매입**에 대해서는 **기준금리 이상**을 **최저입찰금리**로 하는 **복수금리 방식**을 적용

o 이와 함께 **통화안정계정**(이하 '통안계정') **정례 입찰일**을 현행 화요일에서 **목요일로 변경**하여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(RP매입)은 화요일, 유동성 흡수(통안계정 예치 및 RP매각)는 목요일에 실시하는 형태로 정비

— 이에 따라 통방 주간에는 통방 당일에 RP매입(오전) 및 RP매각(오후)을 연달아 실시(연 8회)하고 통안계정 입찰은 미실시*

* 통안계정 입찰 미실시: 현재 지준마감 주간 → 개편 후 통방 개최 주간

(예시) 지준적립기간 중 RP매매 및 통안계정 입찰 일정[1)]

월	화	수	목	금
1	2	3	4	5
	①RP매입(14일물)	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7일물)	
8	9[2)]	10	11	12
		지준마감일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7일물)	
15	16	17	18	19
	①RP매입만기도래 ②RP매입(8일물)	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6일물)	
22	23	24(통방)	25	26
		②RP매입만기도래 ③RP매입(13일물) RP매각(8일물)		
29	30	31	1	2
	④RP매입(14일물)	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7일물)	
5	6[2)]	7	8	9
	③RP매입만기도래	지준마감일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7일물)	
10	11	12	13	14
	④RP매입만기도래 ⑤RP매입(14일물)		통안계정(28일물) RP매각(7일물)	

주: 1) 보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통방일이 수요일인 경우를 상정
2) 지준적립 마감 주간에는 정례 RP매입을 미실시하되 통방 개최 시에는 통방 당일에 실시

2 RP매매 대상증권 확대

□ 공개시장운영 **대상기관의 RP매입 입찰참여 여력**을 **제고**하고 **안정적인 RP매입 기반을 확보**하기 위해 한국은행 **RP매매 대상증권**에 **산업금융채권, 중소기업금융채권 및 수출입금융채권**을 **추가** [금통위 규정 개정, 25.7.10일 시행]

o 한편 현재 25.8월말까지 한시적(22.9.1.~25.8.31.)으로 한국은행 증권매매(RP 및 단순매매) 대상증권에 편입*되어 있는 **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**(MBS)의 경우

단순매매 대상증권에서 일몰 일정에 맞추어 **제외**하되 **RP매매 대상증권**으로 **상시 편입** [금통위 규정 개정, 25.9.1일 시행]

* 한국은행은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주금공 MBS 발행 증대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에 RP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되어 있던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도 포함

한국은행 증권매매 대상증권

	현행	변경 후
단순매매	국채, 정부보증채, 주금공 MBS	국채, 정부보증채 (제외)[1]
RP매매	국채, 정부보증채, 통안증권, 주금공 MBS	국채, 정부보증채, 통안증권, 주금공 MBS, 3개 특수은행채(추가)[2]

주: 1) 25.9.1일 시행, 2) 25.7.10일 시행

3 여타 관련 제도 개선

□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①**RP매매 대상기관** 및 ②**RP매매 우수·부진 기관 선정 기준**을 **정비**하고, ③**우수기관**에 대한 **혜택**을 **강화**

① RP매매 대상기관 선정(매년) 시 한국은행 **RP매매 실적**을 **반영**하는 업권을 '은행 및 자산운용사'에서 '**전체 업권**'으로 **확대** [금통위 규정 개정, 25.8.1일 시행]

② RP매매 우수·부진기관 선정(매월) 기준에 한국은행 **RP매입 낙찰 실적**을 **반영**하고, **선정 업권**도 현행 '은행'에서 '**증권사'까지 확대** [총재 세칙 개정, 25.7.10일 시행]

— 자산운용사는 RP매입 참여 제약*,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의 경우 대상기관 편입 취지 및 대상증권 보유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에 대해 우선 적용

* MMF는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법률로 제한(보유증권의 5% 이내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1조 제2항 제2호)

RP매매 우수·부진기관 선정 기준

	업권	실적 포괄범위
현행	은행	RP매각 및 통안계정 낙찰실적
변경 후	은행	RP매매(매입·매각) 및 통안계정 낙찰실적
	증권사	RP매매(매입·매각) 낙찰실적

③ RP매매 **우수기관**의 **혜택** 내용에 **증권대체 및 대상증권 종류별 매입비중**에 관한 사항을 **추가** [총재 세칙 및 절차 개정, 25.7.10일 시행]

Ⅲ. 기대 효과

□ 금번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은 시장 상황에 맞추어 **유동성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절**할 수 있는 **기반**을 **확충**함으로써 **원활한 자금순환 유도** 및 **단기시장금리 변동성 완화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o 매주 RP매각 및 매입을 정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공개시장운영에 대한 **예측가능성**이 높아지고, 대상기관이 각각의 자금 과부족 상황에 맞춰 한국은행 RP매매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**단기자금시장 수급**의 **불균형 완화**에 기여

— 특히 마찰적 요인으로 업권 또는 기관별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RP매각 및 매입의 병행 실시를 통해 원활한 자금순환의 유도가 가능

o 정례 RP매입을 기본적으로 14일물로 실시함에 따라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시기(분기말, 연말 등)에 기일물 자금 공급을 통해 **단기시장금리**의 **변동성 완화를 도모**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**기일물 RP거래**의 **활성화**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

□ 아울러 그간 비정례적으로 실시해왔던 RP매입을 정례화함으로써 한국은행 **유동성 공급제도**의 **활용**에 대한 **낙인 효과**(stigma effect)를 **완화**하고

평상시 한국은행과의 거래 **프로세스**에 대한 경험을 축적시켜 **대상기관**의 **준비도**(operational readiness)를 **제고**함으로써 비상시 **시장안정 조치**가 **즉각 작동할** 수 있는 **토대 조성**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